

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

제정 2012년 10월 12일 조례 제125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오산시 현충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패”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.
2. “봉안”이란 불상, 위패,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오산시 현충탑(이하 “현충탑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오산시 수청동 87-16 번지에 둔다.

제4조(시설)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.

제5조(위패봉안) ①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·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. 다만,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,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종으로 봉안할 수 없다.

1. 희생·공헌 당시 오산시민인 사람
2. 오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·공헌한 사람

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·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따라 봉안된 것으로 본다.

